

나미비아 (Namibi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당연적용대상	비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 미포함	비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 포함	당연적용 대상 확대
보험료율	1.8%	1.8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9,000 / 300 CFA N\$	9,000 / 300 CFA N\$	-
노령연금 수급요건	60세	60세, 6개월 납부기간	납부기간 요건 추가
보훈연금 수급요건	-	근로 및 기타소득조사	소득조사 실시
연금 및 일시금 지급액	- 노령/장애/보훈연금 : 월 1,100 / 1,100 / 2,200 N\$ - 노령/장애/유족급여 : 일시금 최대 8,475 N\$	- 노령/장애/보훈연금 : 월 1,100 / 1,100 / 2,200 N\$ - 노령/장애/유족급여 : 일시금 최대 8,475 N\$	연금급여액 증가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6년(연금기금), 1965년(독일전쟁 보훈연금), 1973년(연금) 및 1988년(보훈연금)
- 현행법 : 1956년(연금기금), 1992년(연금, 1994년 시행), 1994(사회보장, 1995년 시행), 2008년(보훈연금)

2 제도형태

- 보편적, 사회보험, 사회부조 제도

3 적용대상

- 보편적 및 사회부조 : 나미비아 거주 국민 및 영주권자(보훈연금은 나미비아 거주 국민만 해당)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정기적으로 주당 최소 1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 (비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, 가정부, 임시직, 시간제 근로자 포함)
 - 임의적용 : 자영자
- 특별제도 : 공무원

○ 가입자

- 보편적 및 사회부조 : 없음
- 사회보험 : 월 소득의 0.9%
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월 300 N \$
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 : 월 9,000 N \$

※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현금 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
○ 자영자

- 보편적 및 사회부조 : 없음
- 사회보험 : 월 소득의 1.8%
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월 300 N \$
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 : 월 9,000 N \$

※ 자영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현금 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
○ 사용자

- 보편적 및 사회부조 : 없음
- 사회보험 : 월 임금지급총액의 0.9%
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월 300 N \$
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 : 월 9,000 N \$

※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현금 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
○ 정부

- 보편적 및 사회부조 : 전체 비용 부담
- 사회보험
 - 사용자로서 기여
 - 기타 결손 총당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노령보조금, 보편적)
 - 60세 도달
- 노령급여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60세 도달
 - 근로는 중단되어야 함

- 보훈연금
 - 보훈연금 (보훈연금, 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55세에 도달한 나미비아 독립전쟁 참전 용사
 - 소득조사 :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특정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
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(장애보조금, 보편적)
 - 16세 이상이며, 공공의료기관 의사로부터 일시적·영구적 장애 또는 AIDS 판정
 - 장애 진단은 의사가 판정
 - 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 합산 불가
 - 장애급여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영구장애로 판정받은 경우 지급

- 유족연금
 - 유족급여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
 - 수급권 있는 유족은 유족 배우자, 자녀 및 피부양자
 - 장제비(보편적)
 - 사망자가 사망 시 보편적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(노령보조금, 보편적) : 월 1,250 N\$ 지급
 - 노령급여(사회보험) : 일시금 8,475 N\$ 지급
 - 보훈연금(보훈연금, 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월 2,200 N\$ 지급

- 장애연금
 - 장애연금(장애보조금, 보편적) : 월 1,250 N\$ 지급
 - 장애급여(사회보험) : 일시금 8,475 N\$ 지급

- 유족연금
 - 유족급여(사회보험) : 일시금 8,475 N\$ 지급
 - 유족 배우자가 없는 경우, 다른 수급권 있는 유족들에게 균등 분할 지급
 - 장제비(사회부조) : 최대 3,200 N\$ 까지 장례비용 지급

- 노동·사업관계·고용창출부(Ministry of Labour, Industrial Relations and Employment Creation)
 -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
 - <http://www.mol.gov.na>

- 사회보장위원회(Social Security Commission)
 - 3자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회보험제도 운영
 - <http://www.ssc.org.na>

- 빈곤해결 및 사회복지부(Ministry of Poverty Eradication and Social Welfare)
 - 보편제도 및 사회부조 운영

- 보훈부(Ministry of Veterans' Affairs)
 - 보훈연금 관리

<2019년 ISSA 자료>